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000호

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6. 00.

국토교통부장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